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 제24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「동법시행령 제36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대상자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세대주 성명	공고사유
1	박*호	2009. 5. 15.	2026. 6. 1.~ 2027. 5. 31.	박*환	폐문부재
2	권*현	2009. 5. 15.	2026. 6. 1.~ 2027. 5. 31.	권*상	폐문부재
3	이*호	2009. 5. 10.	2026. 6. 1.~ 2027. 5. 31.	이*희	폐문부재
4	오*민	2009. 5. 01.	2026. 6. 1.~ 2027. 5. 31.	오*훈	폐문부재
5	이*준	2009. 5. 16.	2026. 6. 1.~ 2027. 5. 31.	최*미	폐문부재
6	이*우	2009. 5. 26.	2026. 6. 1.~ 2027. 5. 31.	이*민	폐문부재
7	이*우	2009. 5. 26.	2026. 6. 1.~ 2027. 5. 31.	이*민	폐문부재
8	김*조	2009. 5. 03.	2026. 6. 1.~ 2027. 5. 31.	김*광	폐문부재
9	송*빈	2009. 5. 04.	2026. 6. 1.~ 2027. 5. 31.	임*용	폐문부재
10	조*형	2009. 5. 29.	2026. 6. 1.~ 2027. 5. 31.	조*현	수취인불명
11	이*우	2009. 5. 27.	2026. 6. 1.~ 2027. 5. 31.	이*성	폐문부재
12	연*연	2009. 5. 20.	2026. 6. 1.~ 2027. 5. 31.	김*석	폐문부재
13	김*아	2009. 5. 25.	2026. 6. 1.~ 2027. 5. 31.	김*구	폐문부재
14	김*원	2009. 5. 13.	2026. 6. 1.~ 2027. 5. 31.	김*현	폐문부재
15	김*수	2009. 5. 15.	2026. 6. 1.~ 2027. 5. 31.	홍*임	폐문부재

※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담당자 : 손은채 문의전화 : 031-5189-7216)

2026년 5월 27일

남 양 읍

